

조선시대 한성부의 사법적 역할

1. 聽訟衙門으로서의 한성부
2. 한성부의 直囚와 拘留間의 운용
3. 한성부의 用刑 실태
4. 檢驗기관으로서의 한성부

• 조선시대 사법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형조와 사헌부. 그러나 이 외에 한성부가 사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따라서 이들 세 기구는 삼법사로서 불리며 사법적 역할을 수행. 하지만 이 가운데 한성부가 사법적 역할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또한 서울에서의 일반재판은 정도와 성질에 따라 오부, 한성부, 형조에서 각각 시행. 신분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비는 장례원, 관원은 의금부, 종친은 종부시에서 각각 관장. 따라서 실제로 있어서는 각 관사마다 사법적 기능이 서로 중첩되고 착종되어 있는 실태. 이러한 상황에서 한성부의 사법적 역할과 법사로서의 지위에 대한 파악이 필요.

1. 청송아문(聽訟衙門)으로서의 한성부

• 한성부는 조선 초부터 도성 5부의 일과 함께 전지(田地)와 가사(家舍)를 결송(決訟)하는 관서의 역할을 수행. 1413년(태종13)에 형조의 송사를 이관. 한성부 관원으로 검판관 1원, 검참군 2원을 추가하여 송사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¹⁾

• 이후 1427년(세종9) 민과 관련된 소송에도 관련하여 양천분간, 노비소송이 첨가됨. 1487년(성종18) 형조, 장례원, 사헌부에서 노비의 소송과 부자분간(父子分棼) 등의 일에 대해 상피(相避)가 있으면 모두 한성부로 이관. 조선 초 노비송의 폭주 및 상피제도는 각 법사간의 분장원칙을 흔들리게 하는 계기가 되며 체송(滯訟)의 원인이 됨.

• 1427년(세종9) 형조와 사헌부는 잡송(雜訟) 증가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그 일부를 한성부로 이전. 형조에서 관장한 도박 및 화재 금지, 양천상혼(良賤相婚) 금지, 검시(檢屍) 등의 일과 사헌부 소관의 시집 못 간 노처녀의 성혼(成婚), 기한이 지났는데도 장사지내지 않는 일, 서울 안의 환상 추징 등의 일이 한성부로 이전됨.²⁾

• 1477년(성종8) 투구(鬪毆) 등의 일은 한성부가 전담하여 체포하여 즉결. 그러므로 매리(罵詈), 투구(鬪毆)와 같은 송사는 한성부에서만 담당하여 청리(聽理).³⁾ 중종대에는 처첩분간의 송사도 한성부가 담당.

• 법사 간 분장원칙의 동요는 조선후기에 더욱 만연. 종래 한성부는 전택을 관장하고, 장례원에서는 노비를 관장하며, 형조에서는 형옥과 법률을 관장하는 실정. 그러나 백성들이 한 가지 소송을 여러 관사에 몰려와서 호소. 1725년(영조1) 지사(知事) 김흥경(金興慶)은 전민의 소송은 각각 관장하는 곳에 귀속시키고 다시 다른 관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영구히 법으로 정할 것을 요청. 영조는 법사 간 분장을 확실히 하고 이를 『속대전』에 규정. 한성부는 전택(田宅) 관련 소송을, 장례원은 노비 관련, 형조는 전택과 노비 관련 법률을 아울러 담당함. 노비 가운데 성균관 노비 관련 소송은 여러 법

1)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0월 21일 정묘

2)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9월 12일 정유

3)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7월 12일 정축

사가 직접 판결할 수 없으며 성균관으로 이송하여 조사하고 처리하고, 종친이 관련된 잡송은 종부시(宗簿寺)에 정소(呈訴)하지 않고 형조에 신고하여 형조가 조사해 주문하게 함. 만약 한 통의 문기(文記) 내에 전지와 노비를 함께 다루었으면 분리해서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함께 청리. 노비에 대해서만 쟁송하고 전택에 대해서는 쟁송하지 않거나, 전택에 대해서만 쟁송하고 노비에 대해서는 쟁송하지 않으면, 소송하는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쟁송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원고에게 초사(招辭)를 받은 뒤에 소송한 사안만 청리함.⁴⁾

• 그러나 이러한 분장원칙에도 백성들은 자신의 편의를 취하여 다른 관사에 정소, 타사 또한 이를 받아들여 청리하는 폐단이 발생. 따라서 한성부의 경우 전택 소송만을 담당하지만 노비소송도 취급하는 양상이 벌어짐.⁵⁾

• 1764년(영조40) 노비송사를 담당하는 장례원을 폐지하고 형조로 이속. 『추관지』에 따르면 소송 분장이 달라짐. 국가의 처벌이나 전국의 소송은 반드시 형조를 통해 받아 관원에 관한 것은 의금부로, 절도에 관한 것은 포도청으로, 토지와 백성(田民)에 관한 것은 한성부로 옮김. 한성부는 기존 전택 소송에서 전민 소송을 아울러 관장하는데⁶⁾ 노비소송도 담당하던 한성부가 이에 대신하여 겸장하게 된 것으로 생각.

• 이러한 한성부의 소송 처결 수는 3개월 동안에 한성부, 장례원에서는 작은 사건은 30건, 큰 사건은 20건을 기준으로 하며, 형조에서는 작은 사건은 50건, 큰 사건·중간 사건은 30건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는 한 자급을 강등시킴. 매 계절의 끝 달에 형조, 한성부, 개성부, 장례원의 당하관(堂下官)은 그들이 처결한 송사의 건수를 왕에게 보고함.⁷⁾

• 경국대전에 규정된 결송도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1618년(광해군10) 이전 결송도수 폐지, 이 법이 폐지되어 결송아문에서 소송을 지체하거나 전관(前官)이 이미 결송한 횟수를 다시 서계하여 책임을 모면하려 하는 등 폐단 발생, 결송도수는 형식이 되고 맘. 이후 결송도수제도는 복원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사건의 시비내용을 제외하고 년월, 소송아문, 접수일자, 결송여부 등을 써서 법사에 올리도록 한 뒤, 지체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관련된 각 관리를 치죄, 소송이 지체되는 폐단을 막음.⁸⁾

• 인조대 수교로 어떤 옥송(獄訟)을 판결하든 간에 대사(死罪)는 30일 기한 내에 처리하고, 중사(中事: 徒配)는 20일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며, 등사(等事)는 10일 내에 확정 판결해서 헌부에 이보(移報)하도록 함.⁹⁾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영조 14년에 이 결송도수가 지켜지지 않아 각별히 신칙하여 거듭 옛 법을 밝히도록 함.¹⁰⁾ 형조, 한성부, 개성부, 장례원의 당하관이 처결한 송사 건수가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는 이조에서 관리.¹¹⁾ 아울러 형조·한성부·사헌부·장례원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공사(公事)는 10일마다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함.¹²⁾

• 이처럼 청송아문으로서 한성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원 제수에도 신경을 씀. 이들이 직무를 게을리 하면 송사가 적체되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성부 관원의 개좌(開坐)여부뿐 아니라 임명도 중요시하게 생각. 17세기 이후 법사 관원의 직무태만이 지적됨.¹³⁾ 1649

4) 속대전 형전 청리.

5) 영조실록 68권, 영조 24년 윤7월 23일 을해

6) 秋官志 卷1 官制 刑曹

7) 經國大典 吏典 考課 決訟道數

8) 광해군일기[중초본] 126권, 광해 10년 4월 16일 을사

9)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12월 11일 갑진

10) 秋官志 卷8 考律部 考律部 續條五 聽訟 決訟度數

11) 典錄通考 吏典 하 考課 續錄

12) 典錄通考 刑典 상 決獄日限 續錄 未行公事

13) 광해군일기[중초본] 49권, 광해 4년 1월 21일 병진

년(인조27) 매달 말에 양사(兩司), 6조, 한성부, 장례원은 개좌한 날수, 당상관이 좌기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주를 달아 기록한 단재[進不進單子]를 써서 들임. 이는 법전에 규정됨.¹⁴⁾ 영조대에 이르면 한성부를 비롯한 사송담당 기관의 개좌여부를 엄격히 조사하여 관원의 태만이 없는지 살핌. 한성부와 형조는 사송(詞訟)을 맡은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4일 동안에 하루만 개좌(開坐)하였고, 호조는 연달아 개좌하지 않아 영조는 해당 관사의 당상을 모두 종중추고함.¹⁵⁾

• 특히 사송(詞訟)은 백성의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한 형조와 한성부의 경우 관원의 출퇴근 시간을 묘시(卯時)에 출근하여 유시(酉時)에 파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무를 충실히 행하도록 함.¹⁶⁾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면 한성부 낭청의 묘유지법이 더욱 해이해져 출근하지 않는 관원이 많아짐. 또한 한성부 낭청의 경우 사송 담당의 주요 관원이므로 이들을 구임. 판관과 주부 가운데 1원은 15삭, 나머지는 6삭으로 함.¹⁷⁾ 사송이 많기 때문에 한성부 관원의 체임도 한꺼번에 하지 않음.¹⁸⁾ 순조대에 이르러서는 기강해이와 민의 불법이 증가할 뿐 아니라 법부(法府) 하속의 폐단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법사 관원의 잦은 교체에서 파악하고 형조와 한성부 당상의 사직단자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원의 체직도 불허.¹⁹⁾

2. 한성부의 直囚와 구류간(拘留間)

● 한성부의 직수

•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죄인을 직접 수감할 수 있는 관사는 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종부시 등 7개. 이들 7개 관사를 제외하고는 죄수는 모두 형조로 이송해서 수감. 1625년(인조3) 이를 어기는 자는 종중추고(從重推考)함²⁰⁾.

• 한성부에 수감되는 죄인은 ① 부채인. 부채인의 수감은 조선초기부터 나타남. 1466년(세조12)부터 한성부에서 빚을 지어 수감된 사람을 3, 4년이 되도록 석방하지 않음. 이 시기 한성부 수도(囚徒)는 모두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들로 세조가 이들을 석방시키도록 했지만, 한성부 서윤, 판관, 참군 등이 태만하여 받들어 시행하지 않음.²¹⁾ 세조는 체옥(滯獄)을 염려하여 수도(囚徒)를 기록하여 이를 보고하게 함. 한성부의 경우 경도(京都)의 호적대장, 시전(市廛), 가사(家舍), 전토(田土), 사산(四山), 도로(道路), 교량(橋梁), 도랑(溝渠), 포흠(逋欠), 부채(負債), 투구(鬪毆), 주순(晝巡), 검시(檢屍), 거랑(車輛), 죽거나 잃어버린 말과 소에 대한 낙인(烙印)과 문서발급 등의 일을 관장.²²⁾ 그 가운데 채무를 진 사람에 대해 부채인의 가족과 노비 중 1인을 한성부에 수감하고 기한을 정해서 빚을 독촉.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한성부에서 계를 올려 형조로 이송하여 엄형한 후 한두 명을 추가로 수감.²³⁾ ② 타인을 구타한 자. 『추관지』에 따르면 한성부의 경우 타인을 구타한 자가 수감됨.²⁴⁾

● 한성부 구류간

14) 典錄通考 吏典 雜令 受教輯錄 每朔末單子書入

15) 비변사등록 127책, 영조 30년 9월 2일

16) 비변사등록 89책 영조 7년 1월 6일.

17) 영조실록 권14, 영조 3년 11월 11일 계해

18) 비변사등록 89책 영조 7년 4월 16일

19)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4월 20일 병신

20) 典錄通考 刑典 推斷 受教輯錄 各司不得直囚

21)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2월 2일 기해

22)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漢城府

23) 승정원일기 124책 효종 3년 7월 11일 경진: 승정원일기 125책 효종 3년 10월 8일 병오

24) 秋官志 卷5 詳覆部 考律部 詳覆部 附 欽恤

• 한성부의 경우 구류인(拘留人)의 문제가 발생. 18세기에 이르면 죄인의 수금 외에 형조, 한성부를 비롯한 각 관사에서 사람들을 구류하는 폐단이 증가. 특히 형조와 한성부의 구류문제가 불거짐. 한성부의 경우 대개 소송과 징채(徵債)를 이유로 이와 관련된 사람을 한성부 공간에 구류.²⁵⁾ 경종 4년 국채를 회수하는 관사에서는 모두 구류간을 둠. 도성 내에 사람을 구금하는 장소가 한정 없어 각 관사에서 구류시키는 규정을 일체 폐지. 이처럼 구류하는 법은 병조, 호조와 같은 아문에서는 물건을 수납할 때 경주인을 잡아 형조로 이송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구류간을 사용한 것에서 시작. 18세기에 이르면 여러 법사 및 오군문(五軍門)과 각 해당 관사 등 수속채(收贖債)를 받는 곳에 모두 구류간이 존재. 하지만 전옥서의 죄수들과 달리 구류간에 갇힌 자들은 수도안(囚徒案)에도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결(疏決)하여 석방할 때 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영조의 경우 수금해야 할 죄수는 모두 전옥서에 가두고 법사 및 각 관사에서 구류하는 규례를 금지하고 사옥(私獄)의 성격을 갖는 구류간을 일체 혁파. 이를 『속대전』에 규정하여 법제화 함. 『속대전』 수금조(囚禁條)에 의하면 각 아문에서 사람을 구류시키는 폐단을 일체 금함. 그리고 대단한 공사(公事)가 아니면 형조, 한성부에서도 또한 구류시키지 말게 하라고 주로 처리함.²⁶⁾ 이는 다시 말하면, 대단 공사와 관계되면 형조와 한성부의 경우 구류를 허락했음을 알 수 있음. 사죄를 범한 죄인을 즉시 추핵(抽覈)하지 않을 경우 1, 2일 정도 구류시키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구류간 존재의 빌미가 됨.

• 영조대 구류간의 혁파에 관한 일을 특고로 신칙을 했으나 이의 폐단은 지속. 가벼운 죄를 범해도 번번이 구류시켜 10일에서 30일을 넘는 경우까지 있으며, 구류간에 구금된 자로 가득 차 도성민이 곤궁해짐. 형조나 한성부 각 관사에 구금되어 있는 구류인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경수(輕囚) 석방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함. 뿐만 아니라 구류의 주체가 실무를 담당하는 낭청이므로 한성부 당상들도 구류인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함. 따라서 구류인의 침학이 전옥서 죄수보다 심하여 도성민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됨. 정부에서는 『속대전』의 규정에 따라 각 관사에서 사람을 구류시키는 폐단을 엄금하고 여기는 자가 있으면 당상(堂上)·낭청을 논할 것 없이 왕법(枉法)의 율로 논함.²⁷⁾ 또한 구류간의 경우 민가(閭家)의 대지(垓址)를 빼앗아 차지하여 만드는 경우가 많아 영조는 한성부로 하여금 구류간을 철폐하게 한 뒤 대지를 본래 주인에게 내주도록 함.²⁸⁾

• 이러한 구류간은 지가(知家)의 관례가 강화된 것으로 보임. 1655년(효종6) 한성부 낭청이 징채 문제로 부채인을 지가에 잡아 두고 속종 22년에는 한성부에서 쟁송인을 지가(知家)에 잡아두는 것에서 벗어나 관사 공간에 구류하기 시작. 이러한 지가는 사적으로 어염집 가운데 한성부 사령들이 거점하는 곳으로 이들은 지가에 구류할 만한 사람이 생기면 가둬놓고 농간을 부림. 이것이 폐가 됨. 정부는 형조, 한성부 구류간의 혁파 뿐 아니라 지가(知家)에 구류하는 폐단을 금지, 이를 어기는 한성부의 낭청은 제서유위의 율로 시행.²⁹⁾

• 1795년(정조19) 정조는 구류간을 철폐. 형조의 경죄수 및 각처에 구류해 둔 사람들을 석방하면서, 죄수를 구류하지 못하게 한 금법을 어기고 전옥서 외에 감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류. 이들 구류인 또한 형구를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하였으며, 수도안에 기재되지 않음. 정조는 매일 기록한 수도 단자(囚徒單子)를 5일마다 녹계(錄啓)하는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구류간을 철폐하고 재목과 기와는 시전인들에게 주어 가대(家垓)를 수리하는 데 쓰게 함.³⁰⁾

• 이러한 한성부 내 구류간은 점차 관사 내 새로운 옥사(獄舍)로 존재. 법에 의한 죄수의 구금이

25) 秋官志 卷8 考律部 考律部 續條五 徵債 私債

26) 續大典 刑典 囚禁 [各衙門拘留人], “各衙門拘留人之弊, 一切防禁. 非大段公事, 則本曹·京兆亦勿拘留”

27) 영조실록 68권, 영조 24년 윤7월 23일 을해

28) 비변사등록 98책, 영조 11년 12월 17일

29) 비변사등록 139책, 영조 36년 8월 6일

30) 日省錄 正祖 19年 12月 28日

아닌 한성부 당상과 낭청의 사적 감정에 따라 행해지므로 불공정한 폐가 발생.

- 5부 뇌간(牢間)의 존재. 소송관련 자를 조사하고 신문할 일로 5부 뇌간에 구금.

3. 한성부의 용형 실태

• 한성부의 경우 1413년(태종 13) 처음으로 범죄인을 추국할 때 가쇄(枷鎖)와 신장(訊杖)을 씌. 경외의 죄수를 조율할 때 살인, 강도, 강간, 거집(據執), 잉집(仍執), 오결(誤決), 개정(改正) 등의 일은 형조에서 주관하고, 한성부의 경우 족친 불목(族親不睦), 가재 대전(家財代田), 절도, 화간(和奸), 투구(鬪毆), 매리(罵詈), 도망 죄인의 용은(容隱), 공사 추징(公私推徵), 역매 고찰(抑買考察), 가항 속청(街巷肅淸) 등의 일을 관장. 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나 형조의 업무와 중첩되지 않고 구분함. 또한 범죄인을 추국할 때에는 가쇄와 신장을 쓰되 태죄(答罪)는 직단(直斷)하고, 장죄(杖罪)는 형조에 이문. 이는 모두 형조에서 관장하던 것을 한성부로 이관한 것임.

• 세조 10년 한성부 형장의 규격을 조정. 형조, 의금부, 한성부의 태와 장(杖)이 조금 크고 교판(校板: 형장(刑杖)의 표준으로 정하여 놓은 틀)과 맞지 않아 이를 조정.³¹⁾

• 형조와 한성부의 당상이 태와 장으로 판결한 것을 낭관이 멋대로 刑杖의 도수를 감경하고 속전을 받는 사례에서 용형의 실태를 파악.³²⁾

4. 검험기관으로서의 한성부

• 도성 내 죽은 시신의 검험. 1439년(세종 21) 한성부 검시. 서울 안의 오부(五部)와 성저 10리에 죽은 시체가 있으면, 한성부의 낭청과 오부의 관리가 시체를 검시(檢視)하고 형조에 이문하여 죽은 연유를 추국(推鞠).³³⁾ 1442년(세종 24) 《검시규식(檢屍規式)》 간행. 초검관은 서울의 경우 오부의 관리가 하고 지방에서는 소재지 관의 수령(守令)이 하며, 복검관은 서울에서는 한성부 관리가 하고 지방에서는 인근(隣近) 수령이 수행.

• 전옥서 물고(物故) 죄수의 검험. 죄수가 죽으면 전옥서(典獄署)가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가 한성부에 공문을 보냄. 의금부의 경우 직접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면 한성부가 검험하여 죄수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 정황을 임금에게 직접 보고.³⁴⁾

• 한성부 내 살인사건 시 검험. 1784년(정조 8) 경옥 검험 사목(京獄檢驗事目) 마련.

1. 초복검(初覆檢)은 당부(當部)의 관원 및 한성부의 관원이 전례대로 거행하되 종전(從前)에 검안(檢案)을 모양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오로지 부리(部吏)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자를 알지 못함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이 뒤로는 부관(部官)이 초검할 때에는 한성부의 집리(執吏) 가운데서 문안(文案)에 연습(練習)이 된 한 사람을 정하여 보내어 거행하게 하며, 한성부의 관원이 복검할 때에는 형조의 해방(該房) 집리를 정하여 보내도록 하고, 만일 혹시라도 삼검(三檢)을 행할 때에는 형조 낭청이 복검에 참여하지 않은 타방(他房)을 집리에 나아가게 한다.

1. 초검할 때에 관계되고 연관되어 증거가 드러나 신문해야 적합한 자로 피잔(疲殘)한 부례(部隸)가 추측(推着)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한성부에서 근간리예(勤幹吏隸) 5, 6인(人)을 정하여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검소(檢所)에서 미리 기다리게 하고 한결같이 검관의 분부를 따르게 하되 만일

31)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4월 18일 庚子

32) 추관지 1권 經用 보민사절목

33)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9월 18일 癸亥

34) 대전통편 형전 흡수 京外檢察獄囚,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12월 16일 임오.

태만히 하거나 소홀함이 있으면 형조에 보고하여 엄중히 징계하며, 정범(正犯)이 혹시라도 도망하면 즉시 그곳에서 비밀로 포도청에 이문하여 해당 시각 내에 덮쳐서 체포하는 자료로 삼게 한다. ³⁵⁾

- 조선시대 한성부의 경우 1차 소송기관으로서의 위치 확보
- 전국의 전택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중앙 법사이면서 지역 즉, 한성부 오부와 성저십리 내의 사법권을 담당. 한성부 소송 분장의 변화가 보이며, 조선후기 출금(出禁)이 강화되면서 법사로서의 역할이 강화. 따라서 법사의 전문성이 요구된 반면 구류간과 같은 자의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나타남.

35) 정조실록 17권, 정조 8년 3월 27일 임자